

# 미국 실업보험의 재취업 효과

Suzanne Simonetta (미국 노동부 정책·법규제국장)

실업은 경제호황기에도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다. 노동시장은 늘 변화하며 어느 누구도 언제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될지 확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업보험은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보험에 정책적인 기준을 설계할 때에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등 그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효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를 개괄한 후 잠재적인 재취업 효과를 논하며, 재취업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제도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도를 소개한다.

## ■ 실업보험제도 개요<sup>1)</sup>

실업보험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실직 전 급여의 일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실업보험제도는 연방법에 근거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사업이지만, 그 운영과 관리는 주정부법에 따라 각 주정부가 담당한다 (ETA, May 2019). 연방법에 요구조건이나 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주별로 자체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미국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1) 아래에서 실업보험제도의 여러 주요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로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측면들에 초점을 두고 개괄하고 있으므로 실업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는 아니다.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도 설계상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보험 수급자격 요건, 주당 급여액(WBA), 급여 지급기간(주수), 수급자격 박탈규정, 과세 임금, 세율 및 기타 여러 주요 제도 설계에 있어서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ETA, July 2019).

##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근로경력이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업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서 최근 근무한 적이 없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노동시장 퇴장 후 재진입자, 자영업자, 진정한 독립 계약자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다.

그다음으로, 해당 주의 실업보험기관이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정당한 실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정당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업무가 없어진 관계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직하거나 사용자가 해고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정부 실업보험기관이 최초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나면, 해당 신청자는 매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정해진 일련의 수급요건들을 충족하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근로능력(able to work), 근무가능성(available for work), 적극적 구직활동 등이 포함된다.

## 실업보험 재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연방세와 주세가 실업보험제도의 주요 재원이다.<sup>2)</sup>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연방실업세는 주로 운영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연방실업세법의 유효세율은 근로자 급여(근로자별로 7,000달러

2) 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일부 특정한 경우에 근로자에게도 명목상 실업보험세를 부과한다.

---

를 한도로 함)의 0.6%다. 기본 연방실업세율은 6.0%이지만, 해당 주의 실업보험법이 연방실업보험법을 따르며, 주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받은 장기 미상환 연방차관이 없다면, 사용자는 (주정부에 납부한 주정부 실업세 세율인) 최대 5.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정부 실업세 수입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을 인정받고 난 후에 지급받는 실업급여(regular benefit)로 사용된다. 주정부 실업세율과 실업세 과세대상 임금액은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주정부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실업이력을 반영해 사용자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를 운영한다. 종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실업세 계정에 청구되고, 이 청구액은 이후 수년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주정부 실업세 세율 결정에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종전 근로자들이 많을수록 사용자의 주정부 실업세 납부액이 높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액에 관한 연방정부 기준은 없지만, 주당 급여액은 6개월간 손실 임금의 최저 50%를 대체하되 최고액은 해당 주 평균 주급의 2/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가 오래전부터 있었다(US ACUC, 1996). 많은 주의 주당 급여액이 이 권고 내용을 충족하거나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도 상당수에 이른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6주이며, 지급기간이 26주 미만인 주는 전체의 약 1/4 정도이다. 몇몇 주에서는 실업률에 따라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이 정해진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실업자 개인의 최근 근로경력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달리하는 주들도 있다(ETA, 2019).

## 재취업

실업보험제도는 그 시작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개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정 기간 후에 복직되는 일시해고 상태인) 근로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방법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Employment Office)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up>3)</sup>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했던 과거에는, 고용서비스기관이 해당 지역의 실업급여 사무소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구직지원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했었는데, 최근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업자들이 구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에 연계시키는 여러 새로운 전략들이 실행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재취업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주에서 실업자들에게 주정부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능력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O'Leary, June 2006).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실업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주정부 재정 지출과 실업보험제도 운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 ■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어떠한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목표달성 정도와 더불어 그 효과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Gabe and Whittaker, 2012). 이러한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를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Kekre, 2016). 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개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잠재적 효과는 일자리 질의 개선이다. Nekoei and Weber(April 2015)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들이 구직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업급여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 비해

3) 연방실업세법 제3304조 (a)(1) 및 사회보장법 제303조 (a)(2) 참조.

재취업할 때 임금이 더 높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납세액도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직자들의 구직기간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Katz and Meyer, February 1990). 예를 들어, Krueger and Mueller(August 2008)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실업자가 구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업급여로 인해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도덕적 해이(구직 노력의 가치에 비해 여가의 가치가 증가한 것)가 원인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Chetty(2008)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유동성 제약(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자금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한 원인임을 밝혔다. Chetty의 연구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감소시켜 차선의 결과(sub-optimal outcome)를 초래하는 반면에,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인해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급격한 소득 감소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othstein and Valletta(2017)는 2001년과 2007~2009년 경기침체기 이후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실업급여를 소진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더 오랜 기간 실직 상태로 남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실업자 개인의 재취업 기간이나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유동성 제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효과의 정도는 실업급여의 지급액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거나 급여기간(주수)이 짧을수록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 ■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

실업자 개인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과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에 대응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관련 정책방안들에 대한 현장실험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일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실업자의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4)</sup> 제도의 성격에 따라, 가령 해당 주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실업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도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재취업 임금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한다.

O'Leary(2017)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 노동부(USDOL)와 일부 주정부가 재취업과 관련된 상당수의 실험을 후원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한 실험도 이루어졌다. 특정 기간 내에 취업을 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재취업 장려금에 대한 실험도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다소 절감되었으며 재취업 임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andner(2010)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무엇보다도 실업보험의 근로능력심사와 구직지원제도 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직지원과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가 실업자의 재취업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이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Klerman et al., December 2012). 예를 들어, Lachowska et al.(August 2016)은 근로능력심사가 장기적으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취업 시기를 1~2분기 앞당기고, (실업 이후) 첫 번째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약 2분기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공적인 효과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제도를 다수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왔다.

## 근로자 프로파일링과 재취업 서비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관련 연구의 결과로, 1993년에 모든 주에 근로자 정보관리 및 재취업 지원(Worker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s: WPRS) 제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연

4) 실업급여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주정부의 지급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를 위한 재취업 관련 사업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다.

방법이 제정되었다. WPRS의 기본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 실업급여 소진 가능성(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들을 실업 초기에 미리 파악하여, 이들에게 WPRS 제도에 참가해야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취업 취약 집단으로 분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적절한 재취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실제로 WPRS를 운영하는 일은 설명처럼 쉽지 않다.

이 제도는 실업보험급여 소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직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를 통해 인종, 연령, 성별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WPRS 참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고 따라서 이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보호대상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ETA, 1994). 일부 변수의 경우에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령, 재직기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해석 때문에 프로파일링 모델의 예측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이다. 법<sup>5)</sup>에 따라 각 주는 프로파일링 모델을 통해 실업급여 소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 실업자에게 주정부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으며, 주정부 예산으로 대상자 전체의 재취업 지원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고려하여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실업자에 대해서만 WPRS 참가를 의무화한다. WPRS의 실효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별로 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들을 개발하여 왔다. 가령,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는 주정부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 2억 5천 달러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Barnow and Hobbie, 2013). 각 주정부는 이 기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이 기금의 일정 부분은

5) section 303(j) of the Social Security Act 참조.

WPRS 목적으로, 즉 실업급여 소진 가능성이 높은 실직자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프로파일링 모델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재취업 지원과 수급자격 평가

초기에 이루어졌던 실업보험제도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격 검토는 효과적인 근로능력심사 방안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함께 실업보험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했다. 이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한동안 수급자격 검토 제도(eligibility review program: ERP)를 운영하였다. 주로 채용 부족을 이유로 ERP의 이용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전히 수급자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미국 의회는 주정부가 실업보험 수급자들의 개별 재취업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격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 노동부에 기금을 배정하여, 재취업 및 수급자격 평가(Reemployment and Eligibility Assessment: REA) 제도를 도입하였다(2015년 제도의 내용과 그 명칭이 변경됨). REA 제도 도입 초기에는 21개 주가 실업급여 신청자들에게 수급자격 검토를 포함하여 직접 면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1,800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받았다. 초기의 REA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실업급여 소진 가능성과 부정수급 감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REA가 제도 참가자들의 재취업 시기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enus et al., March 2008). 이렇게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REA 기금이 증액되었다(Wandner, 2017). 이후 REA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초기의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네바다 주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Poe-Yamagata et al., June 2011)(각 주정부는 자체 상황에 맞추어 REA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자연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네바다 주 REA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결과, 네바다 주에서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실업자에게 REA 제도에 참여하도록 한 담당 직원이 재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Michaelides et al., January 2012) 이를 보면,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 REA 제도가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과 재취업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2015년 REA 제도의 명칭은 재취업 지원과 수급자격 평가(Reemployment Services and Eligibility Assessments: RESEA)로 변경되었으며, 제도 적용범위가 장기실업 가능성이 높은 실업자들과 퇴역군인들로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들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PRS 운영을 위한 기금은 충분치 않았고,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는 항상 우선순위에 있음).

2018년 2월에는, RESEA의 영구적인 법적 지위가 2018년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sup>6)</sup>에 명시되었다(이전에는 재량적 교부금 제도였음). 이러한 변화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 RESEA 제도는 WPRS 제도 개별 참가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RESEA 제도의 최신 변화가 면밀하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참가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증거기반 제도 개선을 확대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어떤 주정부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제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새로운 평가결과들이 제시될 것이다.

## ■ 재취업 촉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

앞에서 미국에서 실험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재취업 촉진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몇 가지 정책과 앞서 소개한 제도들이 변형된 형태를 소개한다. 다음과 같은 제도 또는 지원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 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욱 강화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②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개선된 재취업지원서비스
- ③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일자리 프로그램
- ④ 개별 관리, 대면 경력상담, 개인 맞춤 취업정보 제공, 적절한 일자리 알선과 병행한 재취

6) Public Law 115-123, February 9, 2018.

업 지원(USDOL, 2017)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몇 가지 있다. 일자리나누기제도(workshareing)라고도 알려져 있는 단시간 보상제도(Short-Time Compensation: STC)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촉진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STC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실직 시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일부를 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 결과, STC가 개인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며(Wandner, 2018), 이러한 이유로 STC 제도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사한 제도로 자영업지원제도(Self-Employment Assistance: SEA)가 있는데, 창업을 준비 중인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SEA를 시행하는 주는 거의 없지만,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망한 제도다.

## ■ 결론

공공정책 개발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업자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고용기회를 유지, 확보 또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KLI**

---

---

## 참고문헌

---

---

- Barnow, Burt S. and Richard A. Hobbie(Editors)(2013),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The Role of Workforce Programs*,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Benus, Jacob, Eileen Poe-Yamagata, Ying Wang, and Etan Blass(March 2008), “Reemployment Eligibility Assessment (REA) Study: FY2005 Initiative,” ETA Occasional Paper 2008-0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Chetty, Raj(2008), “Moral Hazard versus Liquidity and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2), pp.173-234.
-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ETA)(2019), *Comparison of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Law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 \_\_\_\_\_(May 2019), “Unemployment Compensation: Federal-State Partnership,” Washington, DC: Off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 \_\_\_\_\_(July 2019), “Significant Provisions of State UI Law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 \_\_\_\_\_(1994), *The Worker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s System: Legislation, Implementation Process and Research Findings*, Unemployment Insurance Occasional Paper 94-4, Washington, DC: Unemployment Insurance Service.
- Gabe, Thomas, and Julie M. Whittaker(2012), “Antipoverty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CRS Report R4177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Katz, Lawrence F. and Bruce D. Meyer(February 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Kekre, Rohan(2016), “Unemployment Insurance i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Unpublished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Klerman, Jacob, Robin Koralek, Ashley Miller, and Katherine Wen(December 2012), “Job Search Assistance Programs—A Review of the Literature: Design Options of the Search for Employment,” OPDRE Report No. 2012-39,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Krueger, Alan B. and Andreas Mueller(August 2008), “Job Search and Unemployment Insurance: New

Evidence from Time Use Data”, CEPS Working Paper No. 175.

- Lachowska, Merve Marta, and Stephen A. Woodbury(August 2016), “Effects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Work Test on Long-Term Employment Outcomes”, *Labour Economics*.
- Michaelides, Marios, Eileen Poe-Yamagata, Jacob Benus, and Dharmendra Tirumalasetti(January 2012), “Impact of the Reemployment Eligibility Assessment (REA) Initiative in Nevada,”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Nekoei, Arash, and Andrea Weber(April 2015), “Does Extending Unemployment Benefits Improve Job Quality?,” IZA DP No. 9034.
- O’Leary, Christopher J.(2017), “Evaluating Public Employment Programs with Field Experiments: A Survey of American Evidence”, Upjohn Institute working paper 17-279.
- \_\_\_\_\_(June 2006), “State UI Job Search Rules and Reemployment Services”, *Monthly Labor Review*.
- Rothstein, Jesse and Robert G. Valletta(2017), “Scraping By: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After the Los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 US Advisory Council on Unemployment Compensation(ACUC)(1996), *Collected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4-1996*, Recommendation 1995-2, Washington, DC: U.S. Advisory Council on Unemployment Compensation.
- US Department of Labor(USDOL)(2017),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and Employment Service Operations*, Washington, DC: USDOL.
- Wandner, Stephen A.(Editor)(2017), *Lessons Learned from Public Workforce Experiments*,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_\_\_\_\_(2010), *Solving the Reemployment Puzzle: From Research to Policy*,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_\_\_\_\_(Editor)(2018),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 Fixing a Broken System*,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Poe-Yamagata, Eileen, Jacob Benus, Nicholas Bill, Hugh Carrington, Marios Michaelides, and Ted Shen(June 2011), “Impact of the Reemployment Eligibility Assessment (REA) Initiativ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